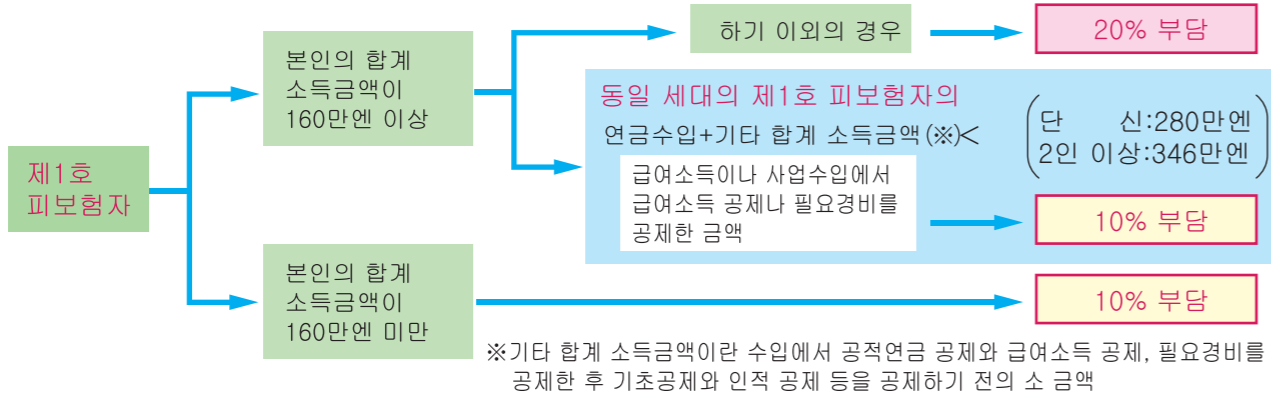


개호서비스의 이용자 부담

<비용의 자기부담>

- ◆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90%가 개호보험에서 지급되고, 나머지 10%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주). 또한, 2015년 8월부터는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은 20%를 자기부담하게 되며(아래 그림 참조), 이용자의 부담 비율이 기재된 개호보험부담비율증이 발급됩니다.

주:거택개호 지원, 개호예방 지원의 경우 자기부담이 없습니다.



<재택서비스의 지급한도기준액>

- ◆ 재택서비스에 대해서는 요개호도별로 개호보험에서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상한(지급한도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오른쪽 표 참조).

실제의 상한(지급한도기준액)은 단위 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1단위당 단가는 지역이나 서비스에 따라 다르지만, 오른쪽 표에서는 기준으로서 1단위 10 엔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 상한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상한 초과분의 전액이 자기부담이 됩니다.

요개호도	보험에서 급부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1개월당·기준)
요지원 1	50,030엔
요지원 2	104,730엔
요개호 1	166,920엔
요개호 2	196,160엔
요개호 3	269,310엔
요개호 4	308,060엔
요개호 5	360,650엔

<식비 등의 자기부담과 경감제도(보족급부)>

- ◆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식비와 거주비(광열수비), 일상생활비 등이 이용자의 자기부담이 됩니다. 또, 통소개호(데이서비스)나 단기입소(쇼트 스테이) 등 시설 등에 가서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소요된 식비와 체재비 등이 이용자의 자기부담이 됩니다.
- ◆ 시설서비스나 단기입소 생활개호 등에 있어서 그 부담액은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지만, 소득이 낮은 분(이용자 부담단계가 제1단계부터 제3단계까지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부담액이 경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특정입소자 개호서비스비(보족급부)).
- ◆ 단, 배우자가 주민세 과세자인 분이나 예저금 등의 금액이 일정액(단신 세대의 경우 1,000만원, 부부의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식비·거주비의 경감(보족급부)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15년 8월부터).

<생계곤란자에 대한 이용자 부담액 경감제도>

- ◆ 구시정촌이「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이용자에게 대해서는, 개호서비스의 10% 부담과 식비, 시설의 거주비 등의 자기부담을 약 4분의 3으로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용자 부담액의 각 경감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구시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예:시설서비스 부담액의 기준(요개호 3~5의 경우) 2015년 8월 이후》

(단위:만엔/30일)

시설 종별 등	이용자 부담단계	개호서비스비 (10% 부담의 경우)	식비	거주비	합계	
개호노인복지시설 (특별양호노인홈)	유닛형 독실	제 1 단계	0.9	2.5	4.9	
		제 2 단계	1.2	2.5	5.1	
		제 3 단계	2.0	3.9	8.4	
		제 4 단계	2.5 ~ 2.9	4.1	5.9	12.5 ~ 13.0
	공동실 (합숙실)	제 1 단계	0.9	0.0	2.4	
		제 2 단계	1.2	1.1	3.8	
		제 3 단계	2.2 ~ 2.5	2.0	1.1	5.3 ~ 5.6
		제 4 단계	2.2 ~ 2.7	4.1	2.5	8.9 ~ 9.3
개호노인보건시설 (통상형)	공동실 (합숙실)	제 1 단계	0.9	0.0	2.4	
		제 2 단계	1.2	1.1	3.8	
		제 3 단계	2.0	1.1	5.6	
		제 4 단계	2.9 ~ 3.2	4.1	1.1	8.1 ~ 8.5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통상형)	공동실 (합숙실)	제 1 단계	0.9	0.0	2.4	
		제 2 단계	1.2	1.1	3.8	
		제 3 단계	2.0	1.1	5.6	
		제 4 단계	3.5 ~ 4.1	4.1	1.1	8.8 ~ 9.3

주1:표의「이용자 부담단계」는 보험료의 소득단계와는 다릅니다.

주2:제1~3단계의 식비·거주비는, 국가가 정한 부담한도액의 초과분에 대한「보족급부」 및 15페이지의「고액개호서비스비」 적용 후의 금액입니다.

주3:「개호서비스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표는 특별구의 경우).

주4:표 외에 심신의 상태 등에 따라 요양식 가산이나 인지증 전문 케어 가산 등이 가산됩니다. 또, 칫솔이나 화장품 등의 일용품과 독감 예방접종, 기호품 등도 자기부담이 되며, 모두 이용자와 시설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5:2015년 4월에 개호보수에 대한 개정이 있으며, 8월에 거주비 등에 대한 개정이 있습니다.

이용자 부담액의 경감제도

개호서비스 등의 이용자 부담에는 아래와 같은 경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액(의료 합산) 개호서비스비>

- ◆ 1개월의 개호서비스의 자기부담 합계액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이 급부됩니다(오른쪽 표 참조). 또한, 1년간의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자기부담액의 합계가 현저하게 고액이 된 경우, 일정 금액이「고액의료합산개호서비스비」로써 급부됩니다.

소득구분	상한액
생활보호수급자	개인 기준으로 15,000엔
구시정촌민세 세대 비과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노령복지연금수급자 ②과세연금 등 수입과 소득금액의 합계가 80만원 이하인 분 	
①, ② 이외의 분	
구시정촌민세 세대 과세자	세대 기준으로 37,200엔
현역 수준 소득 상당(※) (2015년 8월부터)	세대 기준으로 44,400엔

※과세소득이 145만원 이상인 분(단, 세대 내의 수입에 따라 상한이 세대 기준으로 37,200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